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으로서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비율 완화 (규칙 제3조)

- 1) ‘21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2) 2개 이상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협력형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함(규칙 제 3조)
- 3)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를 통해 협력형 복귀를 활성화하고, 특히 비수도권으로 유치되는 기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련 서식 조항 개정 (규칙 제4조)

- 1) 개정 법령에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 2) 해외사업장 요건 면제 대상 해당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규정함
- 3) 유형별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다. 협력형 복귀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규정 (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8호서식 등)

- 1) 개정 법률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근거가 마련되어,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사항 중 선정 신청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필요
- 2)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를 별지 제 8호 서식으로 신설하고, 국내 복귀 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인증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3) 협력형 복귀 지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라.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별지 제 1호, 6호, 7호 개정 및 8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을 “경우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에 해당하면서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나. 그 외의 경우 :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서비스의 생산

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외사업장(국내복귀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서류 [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종류 등]

6. 법 제2조제3호나목 및 영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
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의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선정 등) 영 제11조의6 제3항에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
2.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
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인증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
질적으로 국내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① ----- ----- ----- -----.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u>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 일 것</u>	2. ----- ----- ----- <u>경우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u> --- ----- ----- ----- ----- ----- -----	2. ----- ----- ----- <u>경우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u> --- ----- ----- ----- ----- ----- -----		
<u><신 설></u>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에 해당하면서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 <u>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u>		

<신 설>

② (생 략)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
 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
 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
 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비중이 가장 큰 제품·서
 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
 에서 “매출액등”이라 한
 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
 거 1년간 매출액등의 90퍼
 센트 이하일 것

나. 그 외의 경우 : 해외사업
 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큰 제품·서비스의 생
 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
 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
 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
 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
 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
 류) ① -----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해외사업장(국내복귀를 위하여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종류 등]

5. 삭제

<신설>

7. ~ 25. (생략)

②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해외사업장(국내복귀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서류 [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종류 등]

6. 법 제2조제3호나목 및 영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7. ~ 2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선정 등) 영 제11조의6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

2.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인증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국내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

※ 제9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9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 기업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업태		주요 생산품	
	업종 유형	[] 첨단산업 [] 공급망 안정 필수 품목 [] 해당없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신설·증설을 완료한 또는 국내 사업장 예정인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예정지)				
신설·증설완료일 (예정일)				

1. 개요

해외 진출 기업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업태			
	주요 생산품등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해외진출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	성명 (기업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복귀 유형	유형	해외사업장
	[] 유형 1	청산 · 양도
	[] 유형 2	생산량 축소
	[] 유형 3	유지
복귀 현황	[] 국내사업장 신설 · 증설 완료 [] 국내사업장 신설 · 증설 미완료 [] 해외사업장 청산 · 양도 완료 [] 해외사업장 청산 · 양도 미완료 []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완료 []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미완료 [] 해외사업장 유지(향후 해외사업장 청산 · 양도 · 축소 계획 없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	[] 국내사업장 보유	사업장명(상호): 사업장 업종/업태: 주소지:
	[] 국내 사업장 미보유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

개요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사업장명	· 사업장명(상호): · 사업장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 국가: ·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사업장 규모	· 사업장면적(㎡): · 고용인원(명): · 연평균 매출액: (현지화) * (해당 신청연도의 직전 2년 연평균)		
	사업장 설치일			
	주요 생산품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단위)	

해외사업장 주요 시설 · 설비	주요 생산시설 · 설비	· 생산시설 · 설비명: · 생산품등 명칭: · 생산량 규모(해당 신청연도의 직전 2년 연평균):
	주요 시험생산 시설 · 설비	· 시험생산시설 · 설비명: · 시험생산제품등 명칭: · 본 생산시설 · 설비 구축계획: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 기업명:	자본금 총액	지분율
	· 대표자 성명:		100%

가. 실질적지배자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해외진출기업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지 여부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B)	· 성명(기업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실질적지배자(B)의 배우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실질적지배자(B)의 직계존비속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실질적지배자(B)의 임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실질적지배자(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 고 있는 기업(C)	지배 형태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소유 ☐ B가 C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 ☐ B가 C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면권 보유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 주소: · 연락처:		

실질적지배자(B) 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D)의 임원	임원의 소속 기업 (D)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 주소: · 연락처:			
	지배 형태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 소유 ☐ B가 D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 ☐ B가 D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 면권 보유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합계					
직전 2년간 지분변동 유무	☐ 유 ☐ 무		직전 2년간 30% 미만 변동	☐ 유 ☐ 무	

나. 최대출자자 여부

실질적지배자 외 30% 이상 지 분소유자	· 성명(기업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출자비율(%):
------------------------------	--

다. 대표자 여부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질 적지배자(B)의 관계	☐ 대표자가 B 본인 ☐ 대표자가 B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표자가 B(기업의 경우)의 임원 ☐ 대표자가 B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구체적 내용	

라.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와 해외진출기업 간의 자산대여·채무보증 관계

		자산대여· 채무보증 규모	출자 금액
☐ 자산대여	· 대여 자산명: · 대여 기간:		
☐ 채무보증	· 채무보증 내용: · 보증 기간:		

마. 실질적지배자가 해외진출기업의 대표 또는 총 임원의 50%를 임명한 내용

[] 임면 임원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재임기간(임기):				
	· 주소:				
	· 연락처:				

4. 신청기업(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신청기업	· 기업명:	자본금 총액	지분율(%)
	· 대표자 성명:		100%

가.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출자(보유 주식) 금액	지분율(%)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B)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실질적지배자(B) 의 배우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실질적지배자(B) 의 직계존비속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실질적지배자(B) 의 임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실질적지배자(B) 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E)	지배 형태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이상 지분소유 [] B가 E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 [] B가 E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면권 보유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 주소: · 연락처:		

실질적지배자(B)가 실질적으로 지배 하고 있는 기업 (F)의 임원	임원의 소속 기업 (F)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 주소: · 연락처:		
	지배 형태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이상 지분 소유 [] B가 F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 대여 또는 채무 보증 [] B가 F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 면권 보유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합계				
직전 2년간 지분변동 유무	[]유 []무	직전 2년간 30% 미만 변동	[]유 []무	

나. 최대출자자 여부

실질적지배자 외 30% 이상 지 분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출자비율(%):
------------------------------	---

다. 대표자 여부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질 적지배자(B)의 관계	[] 대표자가 B 본인 [] 대표자가 B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표자가 B(기업의 경우)의 임원 [] 대표자가 B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구체적 내용	

라.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외진출기업간 자산대
여·채무보증 관계

		자산대여· 채무보증 규모	출자금액
[] 자산대여	· 대여 자산명: · 대여 기간: (세부내용은 별도 제출)		
[] 채무보증	· 채무 보증내용 : · 보증 기간 : (세부내용은 별도 제출)		

마.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해외진출기업의 대표 또는 총 임원의 50% 이상을 임명한 내용

[] 임면 임원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재임기간(임기):				
	· 주소:				
	· 연락처: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 관련	· 선정 신청일(국내사업장 신설·증설 미완료기업의 경우):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기업의 경우):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및 폐지 여부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 [] 선정 신청일부터 과거 2년간 기존 국내사업장의 매각 등 폐지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부터 과거 3년간 기존 국내사업장 매각 등 폐지			
기존 국내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상호): · 사업장 업종/업태: · 사업장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			
	전화		팩스	
실질적지배자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총수입금액)	·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총수입금액):			
해외진출기업의 유형자산	· 총 보유 유가증권 규모: · 국내 기업관련 유가증권 규모: ·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기업 명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기업의 개요 관련 1. 신청기업 정관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 관련 4. 해외사업장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품등 종류 등) 해외진출기업과 기업의 실제소유자의 관계 관련 (신청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5.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청연도와 직전 2년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6.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7.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9.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0.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11.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2.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3.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담당 공무원	신청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와 관계 관련 (신청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14. 신청기업의 해당 신청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5.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 16.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7.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18. 신청기업의 임원명부 19. 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0. 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 관련 21.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2.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신청기업의 개요 관련 1. 신청기업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정관 2.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관련 3.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청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 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6.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7.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8.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9.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1. 개요’와 관련하여 대표자 성명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대표자와 동일’이라고 적습니다.
3. ‘1. 개요’와 관련하여 대표자 생년월일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대표자와 동일’이라고 적습니다.
4.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청산·양도 및 축소의 대상이 된 해외사업장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5.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연평균 매출액은 현지화로 적습니다.
6.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장을 청산한 경우에는 청산한 해외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7.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사업장 주요시설·설비 작성의 경우 청산·양도 시에는 가장 생산규모가 큰 생산시설·설비를, 축소의 경우에는 축소의 대상이 된 생산시설·설비를 적습니다.
8.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의 관계 중 구체적 내용 작성란에는 []에 체크한 내용에 따라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9. ‘4. 신청기업(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와 관계 중 구체적 내용 작성란에는 []에 체크한 내용에 따라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10.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기존 국내사업장 현황란은 폐지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폐지한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11.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및 ‘4. 신청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작성 시 실질적지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 국내복귀계획서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주요 생산제품등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주요 생산제품 등 (생산제품 등 명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단위)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주요 생산제품등 (생산제품등 명칭)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5 단위)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건축물 신설·증설 계획	☐ 건축물 신축	건축물 주소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시공사명		
		신축기간		
		신축허가청(신고청)		
	☐ 건축물 증축	건축물 주소		
		변경 전 건축면적		
		변경 후 건축면적		
		변경 전 건축연면적		
		변경 후 건축연면적		
		시공사명		
		신축기간		
		신축허가청(신고청)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주소		
		변경 전 용도면적		
		변경 후 용도면적		
		변경 전 용도면적		
		변경 후 용도면적		
		변경 후 용도면적		
		변경 후 용도면적		
		허가청(신고청)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건축 물 매입	매입건축물 주 소		
		매입건축물 건 축면적		
		매입건축물 건 축연면적		
		매입가격		
		매도자 (주소 및 연락 처)		
	[] 건축 물 임차	임차건축물 주 소		
		임차건축물 건 축면적		
		임차건축물 건 축연면적		
		임차가격		
		임차기간		
		임대자 (주소 및 연락 처)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생 산 시 설 · 설비 및 시험 생 산 시 설 · 설비 설치 (임차) 계획	[] 생산 시 설 · 설비	시설 · 설비명	용도	시설 · 설비명	용도	구입처 (임차처) 및 연락처	구입 (임차) 가액	설치일 (임차일)
	[] 시험 생 산 시 설 · 설비	시설 · 설비명	용도	시설 · 설비명	용도	구입처 (임차처) 및 연락처	구입 (임차) 가액	설치일 (임차일)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기존 국내사 업장 폐지 관련	기존 국 내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 업종: •사업장 책임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을 폐지한(할 예정인) 경우 폐지일(폐지에정일): •폐지의 형태: [] 매각, [] 양도, [] 시설물 폐기, [] 1년 이상 영업중지	•사업장명: •사업장 업종: •사업장 책임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 •폐지의 형태: [] 매각, [] 양도, [] 시설물 폐기, [] 1년 이상 영업중지
		•매각액:	•매각액:
		•기존 사업장 부지총면적:	
		•매각 면적:	
		•고용인원:	•고용인원:
	신설·증 설 국내사업 장	•사업장명:	•사업장명:
		•주소:	•주소:
		•총 투자액: (입지: , 설비:)	•투자액:
		•고용규모:	•고용규모: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신설·증설 완료일	[] 신축·증 축 건축 물의 사 용승인 일	승인일		
		허가청명		
		허가청 담당자 및 연락처		
	[] 건축물의 용도변 경 허가 서(신고 확인서) 발급일	허가서 (신고확인 서) 발급일		
		발급청명		
		발급청 담 당자 및 연 락처		
	[] 생산시 설·설 비 설치 완료 신 고일	신고일		
		신고청명		
		신고청 담 당자 및 연 락처		

(5쪽중 제4쪽)

	[]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 차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					
		계약상대자					
		(임차의 경 우) 기간					
	[] 생산시설·설비 또는 시험생산시설·설비 구매· 임차 계약체결일(제조업 외 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건축 면적 500㎡ 미만인 경우)	시설·설비명	계약체결일	시설·설비명	계약체결일		
선정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 국내복귀계획서,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 국
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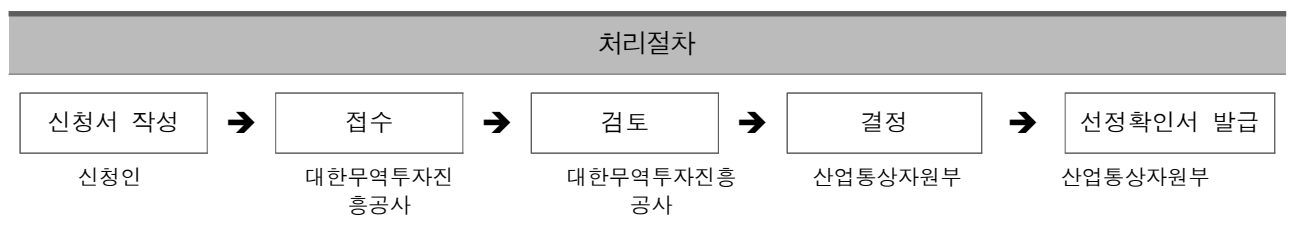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국내 신설 · 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2. 건축물 신축, 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3. 신축 · 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4. 제조시설 명세서 등 생산시설 · 설비 명세 5. 건축물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6. 생산시설 · 설비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7.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국내복귀계획서’ 는 서식의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작성하고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는 서식의 음영부분을 작성합니다.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1. 국내복귀 유형

- [] 유형 1(해외사업장 청산·양도)
[] 유형 2(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 유형 3(해외사업장 유지)

2. 국내복귀 완료 여부

- [] 국내복귀 완료기업 : 해외사업장 [] 청산·양도완료(년 월 일),
해외사업장 [] 축소완료(년 월 일), [] 유지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년 월 일)
- [] 국내복귀 진행기업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 예정, [] 완료(년 월 일)
해외사업장 [] 축소예정, [] 축소완료(년 월 일), [] 유지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 예정, [] 완료(년 월 일)

이
아
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선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시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A)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업 구분 [] 수요기업 [] 국내복귀기업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인 (B)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업 구분 [] 수요기업 [] 국내복귀기업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협력관계 주요내용	기업 간 주요 협력내용		
	물품 공급·수요 [] 서비스 공급·수요 [] 공동 연구개발 [] 기타 []		
	협력내용별 목표 및 향후 계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A)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B)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협력형 복귀기업 상세계획서 및 구매동의서, 협약서 등 기업 간 협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검토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선정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